

의안번호	2210338
의 퇴 인	이언주 의원
회 답 일	2025. 7. 8.
추계번호	25A2681

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, 주력산업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1,100만원, 2031년 1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5,500만원(연평균 7,1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등 (안 제5조)	300	—	—	—	—	300	60
주력산업발전위원회 (안 제6조)	11	11	11	11	11	55	11
합 계	311	11	11	11	11	355	71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주력산업발전위원회)	○ 주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력산업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(제1항)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2.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- 3. 주력산업 관련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- 4.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- 5. 그 밖에 주력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3	안 제8조(혁신클러스터의 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- 1. 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·기관들의 역량 강화 - 2. 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·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 - 3. 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- 4. 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역 외의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 - 5.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- 6. 그 밖에 혁신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재량규정
4	안 제9조(산업통계·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함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주력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(제2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력산업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력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5	안 제10조(주력산업기업의 재구조화 지원)	○ 정부는 주력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 및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환경친화적 기술,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2조(주력산업 인력의 확보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- 1. 직업 훈련,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- 2.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 - 3. 퇴직근로자 등 주력산업 관련 기술 숙련 인력이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소유한 기능·지식의 활용,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 － 4. 그 밖에 주력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7	안 제13조(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14조(주력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주력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－ 2. 주력산업 관련 기술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 － 3. 주력산업기업의 기술 관련 교육·컨설팅 － 4.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	재량규정
9	안 제15조(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주력산업 관련 정보·기술·인력의 국제교류 － 2. 주력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·홍보활동 지원 및 해외전시회 등의 개최·참가 － 3. 주력산업 수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－ 4. 주력산업 수출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	재량규정
10	안 제16조(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기업과 주력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주력산업기업·주력산업의 첨단화 및 자동화 － 2. 주력산업기업·주력산업의 환경친화적 기업·산업으로의 전환 － 3.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과의 융합 촉진 및 활성화 － 4. 동반성장을 위한 주력산업기업 간 네트워크의 강화 － 5. 주력산업기업·주력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주력산업기업과 협력업체 간 주력산업 관련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1	안 제17조(세제 지원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력산업기업에 대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
12	안 제18조(금융 지원 등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주력산업기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·융자 등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—
2	안 제6조(주력산업발전위원회)	○	—
3	안 제8조(혁신클러스터의 지원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4	안 제9조(산업통계·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)	X	
5	안 제10조(주력산업기업의 재구조화 지원)	X	
6	안 제12조(주력산업 인력의 확보)	X	
7	안 제13조(주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	X	
8	안 제14조(주력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)	X	
9	안 제15조(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0	안 제16조(주력산업기업 및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11	안 제17조(세제 지원)	X	
12	안 제18조(금융 지원 등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의 주력산업 관련 재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 - 제정안은 주력산업을 “생산, 고용,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산업으로서 석유화학, 철강, 조선, 자동차, 반도체, 배터리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”으로 정의하고 있음(안 제2조제1호)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5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
 - 제정안의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계획의 수립에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 - 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「주력산업·첨단산업·바이오안전산업 중간평가 대상사업 심층분

석 및 평가대응」(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, 2024년, 2억 3,970만원), 「산업구조 고도화 전략」(산업통상자원부, 2017년, 3억 5,455만원) 등

-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제정안에 따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등 (안 제5조)	300	—	—	—	—	300	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주력산업발전위원회(안 제6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주력산업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회의수당”으로 함

- 제정안은 주력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,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 수는 과반인 11명으로 가정함
- 동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동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다음과 같음
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2. 주력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3. 주력산업 관련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4.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주력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주력산업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- 제정안에 따라 주력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주력산업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주력산업발전위원회 (안 제6조)	11	11	11	11	11	55	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